

변경대비표

1. 대상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2. 시행일 : 2020 년 2 월 21 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변경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p>제 6 조(저축금의 납입)</p> <p>①~ ③ (생략)</p> <p>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u>고객</u>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금융상품물>>펀드>>펀드자료실>>공지사항>>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2010.6.4)),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p> <p>⑦ <u>고객</u>은 제 6 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5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u>고객</u>이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p>	<p>제 6 조(저축금의 납입)</p> <p>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인터넷홈페이지(금융상품물>>펀드>>펀드자료실>>공지사항>>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2010.6.4)),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p> <p>⑦ 저축자는 제 6 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5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p>	<p>용어 정비 (‘<u>고객</u>’→ ‘<u>저축자</u> 저축금이용료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알려준다. → 통지합니다.)</p>

<p>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p> <p>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u>제 9 조제 3 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u>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p>	<p>⑧ 회사는 <u>투자자예탁금</u>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u>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u> 그 변경내용을 함께 <u>저축자</u>에게 통지합니다.</p>	<p>조문수정 금투업규정 (§4-37)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p>
<p>제 9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p> <p>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u><신 설></u></p>	<p>제 9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p> <p>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u>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u></p>	<p>조문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70①)개정, 금투업규정 (§4-35 의 2) 신설에 따른 조문 수정</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u>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아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u></p> <p>가.~마.(생략)</p> <p><u><신 설></u></p>	<p><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u></p> <p>가.~마.(현행과 같음)</p> <p><u>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u></p>	<p>조문이동 및 수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70①2 호)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p> <p>조문신설 금투업규정 (§4-36①3 호) 개정에 따른 내용 신설</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③ (생략)	③ <삭제>	조문삭제 금투업규정 (§4-37) 개정에 따른 삭제(월간 매매내역 통지 대상 상품에서 집합투자증권 은 제외한다는 내용 반영)
제 15 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② (생략)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u>고객</u>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u>저축자</u>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어 정비 (‘고객’→ ‘저축자’)
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u>고객</u> 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전에 게시한다.	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u>저축자가</u>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용어 정비 (‘고객’→ ‘저축자’)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